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30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이광희·김문수·양문석

임미애 · 민병덕 · 김영환

김우영 · 황명선 · 오세희

박용갑・황정아 의위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"기부행위"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. 예외적으로,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·시·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.

그러나 통상 이·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,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. 따라서 이·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.

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

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·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"정기총회에"를 "이·취임식, 정기총회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第112條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| 第112條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| 2 |
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| |
|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| |
| 지 아니한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의례적 행위 | 2 |
| 가. ~ 아. (생 략) |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|
| 자. 읍•면•동 이상의 행정 | 자 |
| 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| |
| ·예술·체육행사, 각급학 | |
| 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| |
|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 | |
| 적인 범위에서 상장(부상 | |
| 은 제외한다. 이하 이 목 | |
| 에서 같다)을 수여하는 행 | |
| 위와 구·시·군단위 이상 | |
| 의 조직 또는 단체(향우회 | |
| ・종친회・동창회, 동호인 | |
| 회, 계모임 등 개인 간의 | |
| 사적모임은 제외한다)의 | |
|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 | 이・취임식, 정기총회에 |

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 장을 수여하는 행위. 다만,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 록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)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
차. ~ 파. (생 략) 3. ~ 6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

| <u>.</u> |
|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차. ~ 파. (현행과 같음)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